

2023 중국·신 북방(러시아·CIS)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 사업 안내

인천광역시 「2023 중국·신 북방(러시아·CIS)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전년도 수출액 2,000만불 이하)
 - 신청접수일 현재,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
- 신청제외 대상
 -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, 동일 규격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. (동일품목 이중수혜 금지)
 - ※ 단, 제품분야별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
 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 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 - 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2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
- '23년 사업비 : 139,000천원
- 선정규모 : 55개사 내외
 - 업체별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(약 1.5배수 선정 : 예비포함)
 - ※ 규격인증 14개사 내외, 부가지원 41개사 내외
 - ※ 지원업체 수 및 지원금 등은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
 - ※ 당해연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에 4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(단 미달일 경우 참가 허용)
- 신청기간 : 2023. 4. 4(화) ~ 2023. 4. 28(금) 17:00
- 지원내용
 - 중국·신 북방(러시아·CIS)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(시험인증, 기술컨설팅,

부가지원 등)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

* CoC(공인적합인증, Certificate of Conformity) 분야

☞ 제3자(인증기관)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

* DoC(자기적합선언, Declaration of Conformity) 분야

☞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같음되는 경우(인증 규정상 제3자(인증기관)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)

○ 중국 인증분야(27개)

AQSIQ (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)	CCC(중국강제인증)	CCS(중국선급인증)
CEL (중국에너지효율라벨)	NMPA (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)	CGAC (중국가스용품품질 감독시험센터)
China Environmental Labelling(중국환경표지인증)	CMA(중국계측학허가인증)	CPA(중국계측기형식승인)
CQC(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)	CSEL (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)	CSQL (중국안전품질승인)
HG/T 2888-2010 (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)	ICAMA(중국농업부등록)	LA mark
MOH(중국보건부인증)	NAL(중국통신인증)	NEPSI(중국방폭관련인증)
NHFPC(신자원식품인증)	NIM(중국계량과학원)	SRRC(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)
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	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	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
중국미생물수입등록	폐기물 선적 전 검사	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증

○ 신 북방(러시아·CIS)지역 인증분야(14개)

CU(EAC) (러시아 강제인증)	Fire Protection Certificate (소방안전증명서)	FSB (러시아암호화인증)
GOST-R (러시아표준규격)	Pattern Approval Certificate (러시아계측기인증)	RS (러시아선급협회)
RTN (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)	Russia Hygienic Conclusion (러시아위생증명)	수출, 입수산물,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
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(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Devices)	GOST-K (카자흐스탄인증)	GOST-U (우크라이나인증)
Ukr SEPRO (우크라이나제품인증)	GOST-B (벨라루스인증)	

① 지원항목

구 분	지 원 항 목	지 원 금 액
시험·인증	강제인증 : NMPA(화장품, 의료기기 등), CCC(중국), CU(EAC,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간 단일인증제도), GOST-R, GOST-B, GOST-K, GOST-U 등 자율안전인증 : CQC 등 기타 : GB TEST, 환경규제대응 등	실제 집행비용의 70% (최대 700만원)
컨설팅비용	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	
부가지원	라벨 등록 및 라벨 제작, 상표 등록	실제 집행비용의 70% (최대 100만원)

※ CoC 및 DoC 구분없이 일괄적용

※ 신규 및 갱신(유효기간 도래 및 경과)지원은 동일하게 적용

② 지원한도(업체당) : 최대 800만원

- 시험·인증 및 관련 기술컨설팅
 - 지원범위 : 실제 집행비용의 70%(최대 700만원)
- 부가지원
 - 지원범위 : 실제 집행비용의 70%(최대 100만원)

□ 지원대상

- 지원항목의 신규 및 갱신(유효기간 경과 및 도래) 신청
- 본 사업 모집 이전에 기 완료(인증, 등록 등)된 품목
 - ※ 2023년도에 획득한 경우만 인정
- 지원항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품목

□ 지원방식 및 조건

- 지원방식(사후 정산지급)
 - 선정업체와 수행업체(선정업체 자율선정)와의 계약체결 후 사업진행
사업완료시 소정양식의 완료보고서 제출, 사후 정산지급
 - 사업완료 또는 사업진행 중으로 선정된 기업도 동일
- 지원조건
 - 과제수행기간은 금년 내 인증 획득을 원칙으로 함
 - 연장은 불가하며 과제수행기간 내 인증획득 불가 시 자동 선정 취소

※ 위 경우, 후순위 기업에게 기회 부여

3. 신청접수

신청기간

- 2023. 4. 4(화) ~ 2023. 4. 28(월) 17:00

신청방법 : 인천시 중소기업맞춤형윈스톱지원서비스에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

신청 구비서류 (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온라인 등록)

- (필수)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2022년 수출증명서(관세무역개발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)
- (해당시) 심사기준표 가점지원대상 증빙자료
 - *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요구 기일 내 미제출시 심사에서 미포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: 인천시 중소기업맞춤형윈스톱지원 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
※ <http://www.bizok.incheon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수출지원사업
→ 중국규격인증획득지원 → 사업신청

4. 신청기업 선정 등

선정방법

- 인천광역시 자체 심사평가표의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순으로 선정
- 동점일 경우,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

선정업체 발표 : 2023. 5(예정) * 선정업체별 개별 통지

- 선정업체로 선정된 후 2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 등을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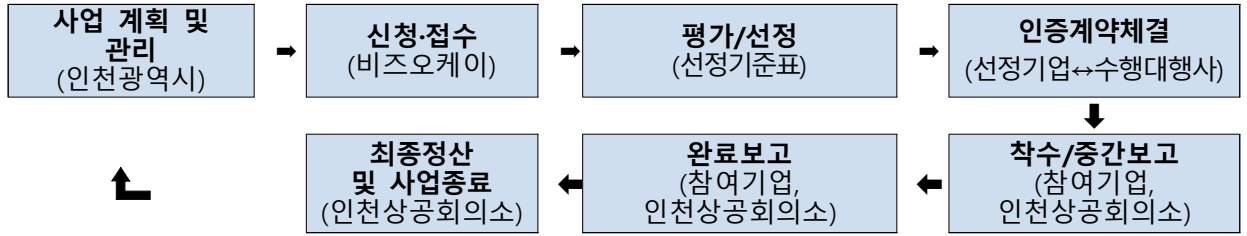
5. 사업추진 등

자율선정

- 선정업체는 컨설팅 업체를 자율선정

추진절차

- 추진절차



-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
 - 보완사항 통보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 조치하여 서류 제출

6. 유의사항

□ 신의·성실이행

-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문서의 허위제출(기재)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며, 인천광역시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□ 대상 선정 후 포기 시 제재사항

- 선정업체 발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일정기간(2년 내외) 제외됨

단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□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□ 문 의 :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배의진 사원 TEL) 032-810-2834

첨부 : 선정평가표 1부. 끝.

인 천 광 역 시 장

(첨부) 선정평가표

선정평가표 '23년 수출 인프라 사업 분야

평가항목	산 출 지 표	적용기간	배 점 기 준	배점	
기본평가	지역경제 기여도	· 본사와 공장 · 인천시내 소재(제조) 여부	현재	· 모두 소재(등록) 3점	3
	시책사업 수혜여부	· 인천시 지원사업 수혜 여부 (국내전시회 참가, 통번역 미반영)	전년도 1년간	· 미 수혜 12점 · 1회 수혜 5점 · 2회 수혜 3점 · 3회 이상 0점	12
	수출실적	· 전년도 수출실적	-	·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 15점 · " 50만달러 이하 10점 · " 100만달러 이하 5점 · " 500만달러 이하 3점 · " 1,000만달러 이하 1점 ※ 수출실적증명서 미 제출시 0점	15
기본평가계				30	
서류추가	특허/인증	· 해외(KS, ISO, CE, FCC, UL 등) · 특허	유효기간	· 건별 1점 (최대 5점)	5
	유망가점	· 인천유망 중소기업, 비전기업 · 수출유망기업(중기청) · 글강기업(市), 중견성장사다리기업 · 인천시수출대상	수출:2년 인천:3년 비전:3년 글강:4년 대상:2년	· 건별 3점(최대 8점)	8
	시책가점	· 여성CEO/장애인 기업 · 가족친화기업 인증 ·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·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·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·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· 수출경영자협의회(등록회원) · 굿디자인(GD)/아름다운공장 · 뿌리기업	유효기간 및 5년간	· 건당 2점(최대 4점)	4
	수상가점	각종 포상(수상) 경력	5년간	인천시장(정부장관)이상 1건한 3점 유관기관(군.구청장, 정부지방청장)이상 1건한 2점	3
서류평가계				20	

- 1) 동일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수출지원 4회 이내로 제한(단 미달일 경우 참가 허용)
- 2) 동점자는 시장성 → 기본평가 → 서류평가 → **서류접수** 순으로 선정
- 3) 선정업체의 중도포기시 2년간 선순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4) 온라인 플랫폼 입점 또는 판매대행 등 온라인 사업에 한하여 유통업 허용